



제목 | 양도담보계약서(수입거래용) 및 약속어음매입기본약정서(소구조건) 약관 변경 안내

날짜 | 2013/05/29

양도담보계약서 (수입거래용) 와 약속어음매입기본약정서 (소구조건) 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시행일 이후의 신규 고객 및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하여 모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
시행일 : 2013년 7월 1일

항목	변경전	변경후	비고
양도 담보계약서 (수입거래용) : 외환020-02			
제1조 양도담보권의 설정	지연 배상금 상환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기한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지급 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%의 이율로 <u>1년을 365일로 보고</u>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.	지연 배상금 상환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기한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지급 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%의 이율로 <u>1년을 365일(윤년은 366일)로 보고</u>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.	윤년 이자계산 방법 개선
제3조 보험 계약	④ 제1항 내지 제 3항에 의한 보험계약에 터잡아 채권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,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, 피담보채무의 기한 도래전일지라도,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<u>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12조</u> 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.	④ 제1항 내지 제 3항에 의한 보험계약에 터잡아 채권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,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, 피담보채무의 기한 도래전일지라도,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<u>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</u>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	상위약관변경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
제8조 물상대위	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멸실, 훼손, 공용징수, 기타의 원인으로 제3자에 대한 보험금, 배상금, 보상금 등의 청구권이 생긴 때에는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, 피담보채무의 기한도래전일지라도,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<u>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12조</u> 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.	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멸실, 훼손, 공용징수, 기타의 원인으로 제3자에 대한 보험금, 배상금, 보상금 등의 청구권이 생긴 때에는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, 피담보채무의 기한도래전일지라도,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<u>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13조</u> 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.	상위약관변경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

항목	변경전	변경후	비고
약속어음매입기본약정서 (소구조건) : 외환 021-02			
	<p>2. 매입 조건</p> <p>a) 소구 방식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i) (생략) ii) 은행의 요구 또는 통지 없이도 귀사는 자동적으로 약속어음을 상환, 은행이 할인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 만기일 이전에 상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, 은행은 상환일자에서 만기일자까지 적용되는 할인 금액을 지급합니다. - <u>여신거래기본약정서(기업용)(이하 “여신거래기본 약정서”)</u> 제7조 제1항,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- 구매자가 만기일까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구매자가 여신거래기본약정서 제7조 제1항,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iii) 귀사는 은행이 송부한 서면 요청서에 명시된 만기일 후 약속어음에 대한 채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. 귀사가 만기일자 이전에 상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, 은행은 상환일자에서 만기일자까지 적용되는 할인 금액을 지급합니다. - 귀사가 <u>여신거래기본약정서</u> 제7조 제3항, 제4항,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- 구매자가 <u>여신거래기본약정서</u> 제7조 제3항, 제4항,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iv) 은행은 ii)항과 iii)항에 명시된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약속어음 보유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v) ii)항과 iii)항의 경우 여신거래기본약정서 제7조 제6항이 적용됩니다. 	<p>2. 매입 조건</p> <p>a) 소구 방식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i) (생략) ii) 은행의 요구 또는 통지 없이도 귀사는 자동적으로 약속어음을 상환, 은행이 할인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 만기일 이전에 상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, 은행은 상환일자에서 만기일자까지 적용되는 할인 금액을 지급합니다. - 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- 구매자가 만기일까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구매자가 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7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iii) 귀사는 은행이 송부한 서면 요청서에 명시된 만기일 후 약속어음에 대한 채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. 귀사가 만기일자 이전에 상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, 은행은 상환일자에서 만기일자까지 적용되는 할인 금액을 지급합니다. - 귀사가 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7조 제2항, 제3항,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- 구매자가 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7조 제2항, 제3항,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iv) 은행은 ii)항과 iii)항에 명시된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약속어음 보유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v) ii)항과 iii)항의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 (기업용) 제7조 제5항이 적용됩니다. 	상위약관변경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

PUBLIC